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정 : 2010. 2. 25. 전면개정 : 2012. 2. 25. 전면개정 : 2016. 2. 24. 개 정 : 2018. 3. 28. 전면개정 : 2021. 3. 2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면개정 '21.3.2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란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 ②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의 2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 또는 장애인럭비협회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 ③ '국가대표지도자'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선임한사람을 말하며, 종목별로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개정 '21.3.22.>
- ④"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체력, 기술, 영상분석,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1.3.22.>
- ⑤"선수경력"이란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해당 가맹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신설 '21.3.22.>
- ⑥"지도자경력"이란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가맹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신설 '21.3.22.>
- ⑦"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신설 '21.3.22.>
- ⑧"강화훈련"은 가맹단체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원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연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상시훈련' 및 종합대회 참가를 위해 한시적으로시행하는 '특별훈련'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1.3.22.>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럭비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절차) ①국가대표 지도자는 해당 가맹단체 전문체육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해당 가맹단체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면 이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한다. <전면개정 '21.3.22.>
 - ②장애인럭비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럭비협회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 표로서 자격을 갖는다.
 - ③트레이너는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가맹단체의 장이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신설 '21.3.22.>
 - ④국가대표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1.3.22.>
- 제5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삭제 21.3.22.>
 -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국가대표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 한다. <일부삭제 21.3.22.>
 - ④ 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장애인럭비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 018. 3. 28.> <일부개정 21.3.22.>
 - 2. 휠체어럭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 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 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 3. 장애인럭비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휠체어럭비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② 지도자(감독, 코치) 구성 시 휠체어럭비 선수 출신이 우선 적용된다. <개정 2018. 3. 28.>
 - ③ 감독,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1.3.22.>
 - ④ 패럴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형별 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장애인럭비협회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1.3.22.>
 - ⑤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8.> <개정 21.3.22.>

- 제7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1.3.22.>
-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신설 '21.3.22.>
-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럭비협회 전문체육위원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가맹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단, 종합대회 국가대표선수는 장애인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1.3.22.>
 - ② 장애인럭비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럭비협회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 <개정 21.3.22.>
- ③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 공개 선발전을 통한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럭비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단체 종목의 경우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1.03.22.>
- ④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상시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목의 특성상 연도 말까지의 랭킹 또는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차기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종목의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1.03.22.>
- ⑤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 ⑥ 국가대표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18. 3. 28.><개정 2 1.03.22.>
 - 1. 장애인럭비협회에서 인증된 전국규모대회 및 선수권대회에서 20명 내외의 선수를 선발한다.
 - 2. 시 도장애인럭비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4명 내외의 선수를 선발한다.
 - 3. 1호와 2호에서 선발된 20명의 선수는 체력테스트를 통하여 12명의 선수로 선발한다.
 - 4. 엔트리 구성안에 따라 등급별로 선수 선발을 진행한다.
- ⑦ 1항에서 선발된 선수 중 부상, 경기력 부진,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 결원에 따른 교체의 경우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에는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8. 3. 28.><개정 21.03.22.>
- ⑧ 장애인럭비협회장은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발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지내용을 확정하여 장애인럭비협회, 시·도장애인럭비협회 또

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종목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1.03.22.>

- 1. 국가대표 선수 선발개요
- 2.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 방법 및 근거
- 3. 해당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대회 참가 기준 및 요강
- 4. 기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자료 등
- ⑨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1.03.22.>
- ① 장애인럭비협회 전문체육위원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 대하여 등급분류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21.03.22.>
- 제9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국가대표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1.03.22.>
 - ②국가대표 선수는 장애인럭비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가맹단체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1.03.22.>
-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신설 21.03.22.>
- 가.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1.03.22.>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 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1.03.22.>
-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1.03.22.>
-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신설 21.03.22.>
-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1.03.22.>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8.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신설 21.03.22.>
-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신설 21.03.22.>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1.03.22.>

- ①장애인럭비협회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한다.
- ②장애인럭비협회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장애인럭비협회에 등록된 선수
-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 제12조(자료의 보관)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03.22.>
- 제13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 국가대표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1.03.22.>
- 제14조(국가대표의 임무)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03.22.>
 -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 2.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 3.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 4.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 선발 참여

- 5. 국가대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 8.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및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 9.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1.03.22.>
-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 2. 체력 분야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 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 3. 영상분석 분야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 ③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03.22.>
-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 한 훈련 참여
-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 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1.03.22.>
- 제15조의2(교육) ⑤ 선발 된 국가대표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지도자) 및 반도핑 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장애인럭비협회(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 3. 28.> <개정 21.03.22.>
- 제16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 1. 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교육 시행 및 고충처리 절차 마련
- 제17조(국가대표선발 규정 제·개정) ① 장애인럭비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1.03.22.>
 - ②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반드시 장애인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 ③ 장애인럭비협회에서 제·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의 국가대표 선발 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할 수 없고, 차기연도 국가대표 선발 공지 이전 개정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럭비협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혐의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 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강화훈련 운영에 관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1.03.22.>
- 제19조(장계) ①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를 구성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장애인럭비협회 관련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장애인럭비협회에 대한 징계는 장애인체육회가 한다. <개정 21.03.22.>
 -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징계: 경고, 견책, 감봉
 - 2.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개정 18. 3. 28.> <개정 21.03.22.>
 - ④ 장애인럭비협회 처분의 종류는 장애인체육회 「정관」제11조에서 정한 장애인럭비협회의 권리사항을 제한(정가맹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 포함)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신설 21.03.22.>
- 제20조(전문체육위원회 설치) <개정 21.03.22.> 장애인럭비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다.
 -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 석에 관한 사항
 -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1.03.22.>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선수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

- 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④ 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장애유형별 선수선발 시에는 해당 장애유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이 위촉하다.
-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구성 시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장애인럭비협회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동일 대학 출신자 또는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해당 종목 지도자를 겪직할 수 없다.

부 칙 (12. 2.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2. 25.)

부 칙 (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2016. 2. 24.)

부 칙 (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3. 2 8.)

부 칙 (21. 3. 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1.03.22.>
-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1.03.22.>
 - ② 이 규정 제10조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3.22.>
 - ③ 이 규정 제10조제7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3.22.>

종목 :

평가자: (인)

점검사항	점검내용	배점	평가 점 수		
1. 훈련 관리 (70점)	① 훈련시간은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10	A B C D E 10 8 6 4 2		
	② 훈련인원은 예정대로 참여하는가?	10	A B C D E 10 8 6 4 2		
	③ 감독은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가? (국제경기력 추이, 장애특성, 생활지원등)	20	A B C D E 10 8 6 4 2		
	④ 참여자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감독, 코치, 트레이너, 보조트레이너)	20	A B C D E 10 8 6 4 2		
	⑤ 훈련시 팀dnjzdms 조화롭게 수행되고 있는가? (임원과 선수, 선수상호간, 임원상호간)	10	A B C D E 10 8 6 4 2		
2. 만족도 조사 (30점)	① 지도자(감독) 만족도	30	별지1) 참조		
	총점	100			
종목 의견 개진					
평가 위원 총평					

<별지1> 지도자(감독) 만족도 조사(안)

종 목:

	지표	내 용	만족도				
범주			매우만족 3	만족 2	보통 1	불만족 0	
훈련지도효과	1. 개인 유익성	훈련 프로그램이 나에게 유익했다					
	2. 집단 유익성	훈련이 전체 선수에게 유익했다					
	3. 개인 전문성	내가 전문성(경기력향상)을 함양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집단 전문성	전체 인원의 전문성(경기력향상)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지도 적합성	훈련이 장애유형, 정도가 고려되어 나에게 유익했다					
	기타의견 (훈련관련)						
지 도 자 관 련	6. 준비성	지도자는 훈련 준비에 있어서 철저 하다					
	7. 훈련지도 전문성	지도자는 훈련지도 측면에서 전문 성이 있다					
	8. 훈련내용 전문성	지도자는 훈련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9. 리더십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다.					
	10. 지속성	지도자가 계속 지도자였으면 좋겠 다					
	기타 의견 (지도자 관련)						
총 점							